

韓國電子工業振興會

定款 改正 条文

지난 12월 11日 韓國貿易會館 9層 會議室에서 開催된 '81年度 臨時總會에 참석한 本會 會員社에 의해 만장일치로 可決된 改正 定款의 全條文을 게재한다.

이번 改正된 定款은 電子工業振興法 및 同法 施行令의 改正 (法律 第 3436号 81. 4. 13)에 따라 本會의 定款을 同改正法令과 符合되게 規定 또는 改正한 것이다.

第 1 章 總 則

第 1 條 (設立) 本會는 電子工業振興法 (以下“法”이라 한다) 第 11 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한다.

第 2 條 (名稱) 本會는 法 第 11 條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電子工業振興會” (以下“本會”라 한다)라 한다.

第 3 條 (目的) 本會는 電子工業 (“電氣用品製造業”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振興을 위한 事業을 効率의 으로 遂行함과 아울러 電子工業에 關한 國策의 立案 및 遂行에 積極協助 하므로써 電子工業의 健全한 育成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 本會는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商工部 長官의 承認을 얻어 國內外에 支所 또는 出長所를 둘 수 있다.

第 5 條 (公告方法) 本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 內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 6 條 (施行規程) 本定款으로 定한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 2 章 事 業

第 7 條 (事業) ① 本會는 第 3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電子工業 高度化計劃의 推進
2. 電子機器 (“電氣用品”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등의 國産化 促進

3. 電子機器 등의 輸出振興 및 國際協力
4. 電子工業의 振興을 爲한 調查研究, 情報蒐集, 弘報, 統計 및 各種資料의 刊行 普及
5. 電子工業의 振興을 爲한 對策의 樹立 및 對政府 建議
6. 國內外 展示會의 開催 參加 및 周旋
7. 會員에 對한 事業資金의 融資斡旋 및 本會 自体事業資金의 借入
8. 其他 會員의 利益增進을 爲한 共同事業
9. 電子工業에 關한 政府委託 事業
10. 前各號와 關聯한 附帶事業

② 本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事業年度에 따른다.

第 3 章 會 員

第 8 條 (會員의 区分과 資格) ①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및 團體會員으로 区分한다.

② 第 1 項의 會員의 資格要件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가. 法 第 4 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者(以下 “自動會員”이라 한다)

나.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第 4 條의 規定에 依하여 製造業 許可를 得한 者

2. 準會員

貿易去來法 第 3 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 業의 許可를 받은 者 中 電子機器 等を 取扱하는 者

3. 團體會員

電子工業에 關聯이 있는 團體 및 研究機關

第 9 條 (會員의 加入) ① 正會員 中 自動會員은 登錄과 同時에 本會의 會員이 된다.

② 第 1 項以外의 資格을 가진 者가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할 때에는 加入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하고 加入承認을 얻은 날부터 本會의 會員이 된다.

③ 本会の 會員은 會員이 된과 同時に 所定の 加入金を 納付하여야 한다.

第10条(會員의 權利) 本会の 會員은 다음 各号의 權利를 가진다.

1. 本会の 事業에 参与할 權利
2. 本会的 事業遂行에 따른 諸般 權益을 均占할 權利
3. 本회의 任員에 對한 選舉權, 및 本회의 事業에 對한 議決權
4. 本會를 利用할 權利

第11条(會員의 義務) 本会的 會員은 다음 各号의 義務를 가진다.

1. 本회의 定款 諸規程 및 總會, 理事會의 諸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
2. 總會 및 理事會가 定하는 바에 따른 會費等 本회의 運營을 爲하여 必要한 經費의 納付義務
3. 本회의 事業遂行을 爲하여 必要로 하는 資料提出等 諸般事業遂行에 積極協助할 義務
4. 代表者, 事業體名稱, 事務所 또는 事業의 休廢業等 重要變更事項의 申告義務

第12条(會員의 脱退) ① 會員은 다음 各号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当然히 脱退된다.

1. 會員資格의 喪失
2. 禁治産·破産宣告
3. 除名

② 會員은 脱退願을 提出하므로서 任意로 脱退할 수 있으며 脱退와 同時に 本會에 對한 權利를 喪失하고 義務를 免한다.

③ 脱退된 會員이 이미 納付한 一切의 納入金은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13条(會員의 制裁) ① 本회의 會員이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除名處分等 制裁를 할 수 있다.

1. 本회의 名譽를 顯著히 毀損하거나 利益을 損傷시켰을 때
2. 本회의 事業遂行을 甚히 妨害하거나 妨害하려는 行爲가 있을 때
3. 定款, 規程 또는 諸議決事項을 違反하였을 때
4. 本會에 納入할 負擔金을 1年以上 納入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名處分을 받은 會員은 1年以内に 再加入할 수 없다. 다만, 代表者가 變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条(會員地位의 承繼) ① 相統·合併·其他營業權의 讓受로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權利 義務에 對한 承繼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承繼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30日 以内に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를 한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統, 合併, 其他營業權의 讓受가 있는때에 本회의 會員이 된 것으로 본다.

第4章 任 員

第15条(任員 및 顧問) ①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名譽會長	1名
3. 常勤副會長	1名
4. 副 會 長	若干名
5. 常勤理事	2名 以内
6. 理 事	25名 以内
7. 監 事	2名

② 本會에는 若干名の 顧問을 둘 수 있다.

第16条(任員의 選任 및 報酬) ① 會長은 非常勤職으로 하며 總會에서 會員中에서 選任한다.

② 常勤任員은 有給으로 하며 其他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名譽職任員에 對하여는 實費를 支給 할 수 있다.

③ 本회의 任員中 非常勤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하고 常勤副會長 및 常勤理事는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適任者를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다만, 常勤任員은 會員職을 兼할 수 없다.

④ 常勤副會長 및 常勤理事의 任免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⑤ 顧問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推戴한다.

第17条(任員의 任期) ① 會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其他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補闕에 依하여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任期가 定期總會 開催前에 滿了될 때에

는 그 定期總會가 終了되기 까지 이를 延長한다.

④ 本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當該企業體에서 退任하였을 때에는 後任者가 이를 承繼한다.

第18条(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業務를 統轄한다.

② 常勤副會長은 會長을 補弼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이를 代理한다.

③ 名譽會長, 副會長,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決權을 行使한다.

④ 監事는 本會의 事務執行 및 財産狀況을 監査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으며 報告하여야 한다.

⑤ 常勤理事는 會長 및 常勤副會長의 命에 依하여 業務를 執行하고 會長 및 常勤副會長 有故時 職制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5 章 會 議

第19条(總會의 種類)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区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事業年度마다 1回 開催하며 事業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開催하여야 한다.

③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開催한다.

1. 理事會의 議決이 있을 때
2. 會員 4分之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20条(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總會의 召集은 會議開催 1週日前에 會議의 目的 日時 및 場所를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1条(總會의 議決方法) ① 總會의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② 總會는 會員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며 議決은 出席者의 過半數로 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定款의 變更等 特히 重要한 事項은 在籍會員 3分之 2 以上の 出席과 出席會員 3分之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會員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總會의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代理人은 1人以上의 會員의 議決權을 代理하지 못하며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이나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22条(總會의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号와 같다.

1. 定款의 變更
2. 任員의 選任
3. 加入金, 賦課金, 推薦會費 및 手数料等 會員의 經濟的 負擔이 되는 事項
4. 事業報告 및 事業計劃의 承認
5. 収支決算 및 豫算의 承認
6. 事業資金의 起債와 借入金 限度의 決定
7.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23条(總會議事錄의 作成) 總會의 議事錄은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 議長, 常勤任員 1人 및 出席理事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總會의 日時 및 場所
2. 會員總數 및 出席者數
3. 議事의 進行要領
4. 議決事項 및 贊否數

第24条(理事會의 構成) ① 理事會는 第15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任員으로 構成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5条(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의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② 理事會는 다음의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理事 3分之 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第26条(理事會의 議決方法)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長은 必要에 따라 書面으로서 理事의 意見を 묻어 在籍理事 過半數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로 看做한다.

③ 理事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理事會의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第27条(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号와 같다.

1. 總會 附議事項

2. 自動會員 以外의 會員에 對한 加入 脫退와 會員에 對한 制裁에 關한 事項
3. 會計 및 人事管理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4. 委員會 設置에 關한 事項
5.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支所 및 出張所 設置에 關한 事項
7. 輸出入 去來에 關한 特殊事項
8. 起債와 그 償還
9. 豫算項目 轉用承認에 關한 事項
10. 常勤任員의 任免承認에 關한 事項
11.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12. 其他 本會運營上 必要한 事項

第28條(理事會議事錄作成) 理事會議事錄作成은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總會의 議事錄作成 規定을 準用한다.

第29條(委員會의 設置) ① 本會는 本會의 目的事業을 円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專門分野別로 委員會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學界, 研究所 및 關聯機關, 業界等의 專門家로 構成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은 會長이 委嘱한다.

第6章 機 構

第30條(機構)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必要한 部署와 職員을 둔다.

第31條(職制 및 定員) 本會의 職制 및 職種別 定員은 會長이 定한다.

第32條(職員의 任免) 職員의 任免은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7章 會 計

第33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 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4條(會計의 区分)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区分한다.

第35條(經費) 經費는 加入金, 一般會費, 推薦會費, 特別會費, 手数料 補助金 및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36條(會費等의 賦課徵收) 會費 및 手数料等의 賦課 및 徵收 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8章 承認 및 報告事項

第37條(承認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 定款記載事項의 變更
2. 法第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金을 委託받은 境遇 그 運用 管理에 關한 事項
3. 法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된 補助金의 使用에 關한 事項

第38條(報告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商工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実績
2. 每事業年度의 豫算 및 決算
3. 總會 및 理事會의 主要議決事項
4. 委託業務의 推進에 關한 事項

第9章 解散 및 清算

第39條(殘餘財産等 整理) 本會가 解散할 境遇 清算完了後의 殘餘 財産等에 對하여는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本會의 設立目的과 符合되게 處理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本定款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本定款 改正以前에 施行된 事項은 本定款에 依하여 施行된 것으로 본다.